
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제305회 임시회

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한
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」 개정(안)

2022. 2.

 서울주택도시공사

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」 개정(안)

서울특별시 「투자·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(안)」에 의거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「투자·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(안)」 (공기업담당관-5851호, 2021.5.24.)
 -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

II 주요내용

- 임원의 결격사유(제14조 제1항) 중 제1호 삭제
 - 지방공기업법 개정(2019.12.3.)으로 ‘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’이 공사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사 정관에 반영

지방공기업법 [시행 2020. 6. 4] [법률 제16664호, 2019. 12. 3, 일부개정]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~~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~~ 삭제 <2019.12.3>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삭제 <2015.12.15>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(현행)

제 14 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
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<삭제 2016.12.21>
7.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8. 노동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직원의 임명 및 해임 규정(제15조) 개정

○ **현행 정관 제15조 제목을 ‘임명 및 해임’에서 ‘임면’으로 개정**

- ‘임명 및 해임’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‘임면’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3조와 일치시킴

○ **현행 정관 제15조 제3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4항 후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**

-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(2020.10.20.개정) 을 반영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신설

지방공기업법 [시행 2021. 1. 21] [법률 제17522호, 2020. 10. 20, 일부개정]

제63조(직원의 임면)

-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별표2 <정원표>의 ‘직원 계’ 오기 수정

○ **수정내용 : 별표2 <정원표> 직원 계 1,375 → 1,381**

- 2021.3.5. 직제개편에 따른 정관변경 시 발생한 단순 오기를 바로 잡음
- ※ 2021.2.25. 제363회 이사회 의결사항

III 향후 추진계획

- 2022.2. : 제305회 임시회 보고
- 2022.2. : 정관 인가 및 공포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14 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</p> <p>2. ~ 8. (생략)</p>	<p>제 14 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삭제></p> <p>2. ~ 8. (생략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15 조 (직원의 임명 및 해임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③ 직원의 임명, 해임 및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규로 정한다.</p>	<p>제 15 조 (직원의 임면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공사는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직원의 임명, 해임 및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규로 정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별표 2(제22조제2항 관련)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원 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총정원</th> <th rowspan="3">임원</th> <th colspan="7">직 원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계</th> <th colspan="3">사무직·기술직</th> <th rowspan="2">주거복지직</th> <th rowspan="2">전문직</th> </tr> <tr> <th>소계</th> <th>1급</th> <th>2급</th> <th>3급이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386</td> <td>5</td> <td>1,375</td> <td>902</td> <td>20</td> <td>69</td> <td>813</td> <td>406</td> <td>7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정원	임원	직 원							계	사무직·기술직			주거복지직	전문직	소계	1급	2급	3급이하	1,386	5	1,375	902	20	69	813	406	73	<p><별표 2(제22조제2항 관련)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 원 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총정원</th> <th rowspan="3">임원</th> <th colspan="7">직 원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계</th> <th colspan="3">사무직·기술직</th> <th rowspan="2">주거복지직</th> <th rowspan="2">전문직</th> </tr> <tr> <th>소계</th> <th>1급</th> <th>2급</th> <th>3급이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386</td> <td>5</td> <td>1,381</td> <td>902</td> <td>20</td> <td>69</td> <td>813</td> <td>406</td> <td>7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부 칙</p> <p style="color: red;"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2는 2021.3.5.부터 시행한다.</p>	총정원	임원	직 원							계	사무직·기술직			주거복지직	전문직	소계	1급	2급	3급이하	1,386	5	1,381	902	20	69	813	406	73
총정원			임원	직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계	사무직·기술직			주거복지직	전문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1급			2급	3급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386	5	1,375	902	20	69	813	406	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정원	임원	직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	사무직·기술직			주거복지직	전문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소계	1급	2급			3급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386	5	1,381	902	20	69	813	406	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◎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 호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 제목 중 “임명 및 해임”을 “임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사는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별표2 ‘정원표’ 중 직원 계를 1,381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2는 2021.3.5.부터 시행한다.